

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서

평가기관 소유자의 성명 · 주소	
평가기관의 명칭	
평가기관의 주소	
지정조건	

위 평가기관을 「항공안전법」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9조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직인